

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. 9. 29 선고 2021가단104316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8. 18.

판 결 선 고 2022. 9. 29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/11 지분에 관하여,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1/11 지분에 관하여, 피고와 C 사이에 2021. 5. 19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 피고는 C에게 위 각 부동산 중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2021. 6. 18. 접수 제109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6371082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. 11. 20. “C는 원고에게 20,119,223원 및 그 중 16,588,403원에 대하여 2015. 3. 2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”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나. 망 D이 2020. 10. 15. 사망하였고, 상속인들인 처 E, 자녀들인 F, G, C 및 피고는 2021. 5. 19. 망 D의 재산인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D의 1/2 지분(이하 ‘이 사건 각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이를 모두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‘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’라 한다)를 하였다.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. 6. 18.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3호증,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C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지분을 피고 소유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바, 이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,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지분(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2/11 지분,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은 1/11 지분)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판단

상속재산의 분할협이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.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,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

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,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1. 2. 9.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).

살피건대, 갑 제3 내지 5, 8, 9, 12, 13호증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일인 2021. 5. 19.을 기준으로 한 부동산의 시가를 계산하여 보면,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① 경남 함안군 H 대 235㎡는 37,106,500원(= 157,900원 × 235), ② 그 지상 건물은 28,900,000원, ③ I 전 119㎡는 4,974,200원(= 41,800원 × 119), ④ J 임야 1,686㎡는 3,490,020원(= 2,070원 × 1,686)으로 산정되고, 그 중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① 6,746,636원(= 37,106,500원 × 2/11, 원 미만 버림, 이하 같다), ② 5,254,545원(= 28,900,000원 × 2/11), ③ 904,400원(= 4,974,200원 × 2/11), ④ 317,274원(= 3,490,020원 × 1/11)이 되어 합계 13,222,855원(= 6,746,636원 + 5,254,545원 + 904,400원 + 317,274원)이 산정된다.

그런데,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D은 2011. 11. 21. C에게 5,000만 원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,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(민법 제1008조), 결국 C가 증여받은 위 5,000만 원이 위 13,222,855원을 현저히 초과하므로, C에 대하여는 구체적 상속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(한편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가 망인의 요양비를 부담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, 이 부분 기여분까지 고려하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은 더욱 줄어든다고 볼 것이다).

결국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서 결과적으로 C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, 그 재산분할결과가 C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,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고권홍

[별지]

부동산의 표시

1. 경상남도 함안군 대 235㎡

2. 경상남도 함안군
[도로명 주소] 경상남도 함안군

시멘트블럭조 시멘트기와
지붕 단층주택 49.59㎡
시멘트블럭조 슬레이트지붕
단층 창고 13.22㎡

3. 경상남도 함안군 전 119㎡

4. 경상남도 함안군 임야 1686㎡

- 이 상 -

